



## 강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2013년 2/4분기 유상승계 취득세 감면분 사후관리 계획

2013년도 2/4분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(일시적 2주택) 유예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세무종합전산에 반영된 1가구1주택 수신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예기간(취득일 부터 3년)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감면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하여 세무행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- 검토범위: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2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 중 현재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자.
- 검토대상: 김\*\* 외 1246건(세무종합전산에 구축된 1가구1주택 수신자료 활용)
- 관련법규:
  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[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] 제2호
  -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2[무신고가산세]
  - 지방세법 제20조[신고 및 납부] 제3항
- 추진내용:
  - 관리대상자 검토 및 사전안내(안내문 발송 및 우편발송부 제출)
  - 주택검색결과 수신조회 결과 등록
  - 비과세/감면 사후관리 조사결과 등록 및 결재
  - 수사부과: 유예기간 경과시 무신고가산세 포함하여 추징  
(부과종류: 44.비과세감면조사추징)
  - 처리기한: 2016. 9. 10.

붙임: 1. 주택유상거래감면 관련 업무처리 방법 1부.

2. 사후관리대상(2013년 2분기) 1부. 끝.

★주무관

**김성열**

재산2팀장

**황규현**

세무과장

**정장섭**

기획재정국장

전결 03/03  
**이상형**

협조자

재산1팀장

**임창근**

시행 세무과-7204 ( ) 접수 ( )

우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(수유동) / <http://www.gangbuk.go.kr>

전화 02-901-6496 / 전송 02-901-6508~9 / 2009051343@gangbuk.go.kr / 부분공개(6)